

의안번호	제620호
의결 연월일	2014년 월 일 (제328회)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0
----------	-----

제출연월일 : 2014. 3.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 7. 1.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현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교육부령에 의해 “청주시”로 지정되어 실시하여 왔으나,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2011. 3. 18.)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교육부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 다만,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제4조제1항)

- 3)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14. 7. 1.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이 폐지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지정함

나.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 시 여론조사 충족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 2)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으로 함
- 다.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1. 24. ~ 2014. 2. 13.):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4.1.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1. 삭제 <2010.6.29>
 2.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부칙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후 대조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p>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2.9.]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 8. (생략)
9. 충청북도 청주시
10. ~ 13. (생략)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시행일 : 2014.7.1] 제2조

부칙 <법률 제11624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 ⑩ (생략)